

한경협

ESG Bulletin

2024. 08 | 제 6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EU ESG 규제 인프라, 한 눈에 보기

광장 김수연 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2024년 7월 25일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왔던 EU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공급망 실사법)가 드디어 발효되었다. 이번 공급망 실사법 제정으로 그동안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에 이어 2019년 12월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추진해왔던 ESG 규제 인프라가 얼추 구축되는 모양새다. EU는 ESG 규제(기준)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기에, EU의 ESG 관련 입법은 비단 해당 규제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정책 관계자, NGO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3여 년간 줄기차게 입법을 통해 마련한 EU의 주요 ESG 규제를 정리해보고, 그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 Taxonomy Regulation(녹색분류체계)

2020년 7월 발효된 Taxonomy는 환경 관점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Regulation(EU 회원국이 자체 입법화할 필요없이 그대로 적용)으로 인권, 노동 등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친환경 활동에서 배제함으로써 환경 목표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Taxonomy는 기업에 Taxonomy와 연관된(eligible, aligned) 매출(turnover)·자본지출(Capex)·운영비용(Opex) 등에 대한 공시도 포함하고 있다. EU Taxonomy는 일부 중요 사항들을 위임법률(Delegated Act)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력, 시장 상황, 탄소감축 현황 등을 검토해 친환경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EU 주요 ESG 규제 Snapshot >



(2)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

2019년 12월 제정, 2021년 3월부터 적용 중인 SFDR은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중 7번째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fiduciary duty) 강화 작업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투자 내지 투자자문시 ESG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소비자(최종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Regulation이다. SFDR 시행으로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 EU 금융기관은 ① 금융회사가 투자기업 결정시 고려하는 ESG 관련 위험 식별·평가 및 해당 결과가 투자판단에 반영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금융회사 단위의 공시와 함께 ② ESG를 표방하며 EU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Light Green, Dark Green) 및 (ESG와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2023년 1월 발효된 CSRD는 2014년 11월 마련된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 공시)의 개정 버전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IFRS-ISSB ESG 공시에 견줄 수 있는 EU 차원의 ESG 정보 공시 규제이다. Directive(2024년 6월까지 EU 회원국 각각 CSRD상의 내용을 자국 법률로 마련) 형태로 입법화된 CSRD는 EU 역내 상장·비상장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외에도 일정 非 EU 기업(㉠ 연결 혹은 별도기준으로 지난 2개년 회계연도 연속 EU에서 1억 5천만 유로 순매출이 초과 발생하고, ㉡ 이전 회계연도에 4천만 유로 순매출을 초과하는 EU 지사 또는 CSRD 적용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게 준수를 강제하고 있어 일종의 통상 규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CSRD는 제3자를 통한 검증(감사)을 의무화하면서, NFRD부터 견지되었던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기초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위임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공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제별 기준인 ESRS S2의 경우 공급망 실사 관련 공시를 강제하고 있어 최근 제정된 CSDDD(공급망 실사법)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급망 실사법)

2024년 7월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의회 수정안 대비 적용 대상을 크게 축소한 CSDDD가 발효되었다. 그간 공급망 실사는 2010년대 UN, OECD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RBA 등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겨져 실시되어오다 프랑스(2017년), 네덜란드(2019년), 독일(2021년) 등 EU 회원국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 영역에 포섭되었고, 이후 EU 차원의 특정 품목·이슈에 제한된 공급망 실사 입법(CMR, DR, BR 등)이 이루어지며 진전 중이었다. 비록 전 세계 전 산업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입법인 탓에 최종 통과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Taxonomy, SFDR, CSRD와 함께 EU 그린딜의 마지막 핵심 입법으로 여겨졌던 CSDDD 제정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CSDDD는 전 세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직원 수 1천명이 넘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넘는 非 EU 기업에도 적용되는 지침으로 자체 활동(적용 대상기업과 그 자회사) 및 활동사슬(chain of activity) 내 협력업체(business partners)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국제 인권 조약, 인권 및 기본권 관련 조약, 환경 관련 조약 상의 권리 및 금지 사항을 열거) 관련 실사를 강제한다. 이때 활동사슬 내 협력업체는 업스트림 직간접 협력업체와 제품의 유통·운송·보관 관련 다운스트림 직접 협력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사 절차는 기존 국제기구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정책·위험관리체계 내 실사 통합-위험 평가-조치-고충처리절차-모니터링-공시로 구성되며, 실사 이행 시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실사 관련 법제임에도 기후변화 완화 전환계획을 채택·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 계약상 보증 관련 모범계약조항(Model Contractual Clauses) 가이드선 등 실사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5) CM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분쟁광물 규정)

2017년 5월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CMR은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3TG(tin, tantalum, tungsten, gold) 광물을 EU로 수입하는 업체에게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Regulation이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인 미국 Dodd-Frank Act(제1502조)는 콩고 민주 공화국 및 그 인접지에서 채굴된 3TG에 한하여 제품의 제조 및 기능에 필수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3TG 채굴 지역 범위, 적용 대상 등에서 EU의 CMR과 차이가 있다.

(6) BR (Battery Regulation, 배터리 규정)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2월부터 시행 중인 BR은 2006년 9월 제정된 기존 배터리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EU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전기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Regulation이다. BR은 ①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탄소발자국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판매 제한), ②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도입 및 폐배터리 수거 목표와 재활용 효율·물질 회수 목표 준수 요구, ③ 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의 최소 의무 사용 비율 강제, ④ 배터리 제조사, 수입·유통업체, 최종 사용업체 등 배터리 관련 경제운영업자(economic operator)에게 공급망 업스트림에 대한 실사 의무 부여(단 배터리 재활용업체와 순 매출 4천만 유로 미만 기업은 제외), ⑤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록한 라벨 및 QR코드 부착 의무화, ⑥ 개별 배터리의 제조 이력과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은 디지털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위임법률을 통해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화가 예정되어 있다.

(7) DR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산림전용 방지 규정)

2023년 6월 발효된 DR은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 법률로서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7개 품목 및 그 파생 제품(초콜릿, 가구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유통하거나 EU 역외로 수출하는 업자에게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생산국 관련 규정을 준수, 실사 선언서 제출) 하도록 요구하는 Regulation이다. DR은 운영자(Operator, 규제 제품을 출시·수출하는 사업자로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제3국 사업자,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업자로 포함)에게 산림전용 금지 조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실사를 강제하고 있으며, 거래자(Trader, 사업자를 제외한 공급망 참여자로 EU 역내 자연인·법인)에 대해서는 규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8) 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핵심원자재법)

2024년 5월 발표된 CRMA는 전략(16종)·핵심(34종)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EU의 경제적 전략 자율성을 보호하기 Regulation이다. CRMA는 ① 전략원자재에 대해 가치사슬 단계별(채굴, 제련·정제, 재활용) EU 역내 생산역량 확대 및 역외 특정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한편 ②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지원하고, ③ 전략원자재를 사용해 전략기술 제품(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칩 등)을 생산하는 EU 역내 대기업에게 전략 원자재 공급망에 한정한 실사를 강제하며, ④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⑤ 핵심원자재 판매기업에게 환경발자국(추후 계산·검증 규칙 제정)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에코디자인 규정)

2024년 7월 발효된 ESPR은 순환경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위해 일부 품목에 한정해 에너지 효율만을 규제했던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을 확대·강화한 Regulation으로,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 차량 및 식품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외에 내구성, 재활용 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ESPR은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등 미판매 제품 폐기 관련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소비자도 하여금 구입하려는 제품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도입하고 있다. 향후 에코디자인 세부 요건, DPP 정보 항목 등은 위임법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10) R2RD (Right to Repair Directive, 소비자 수리권 지침)

2024년 7월 제정된 R2RD는 EU 역내 폐기물 발생 감소를 목표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Directive(2026년 7월까지 EU 회원국은 자국 법률로 입법)이다. R2RD는 제조업체에게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휴대폰과 태블릿, 데이터 서버, 용접 장비 등(EU에 수입된 제품 포함)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할 것을 강제하면서(지정 수리업체가 아닌 업체가 수리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제품 보증기간 내 수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수리 시점으로부터 보증기간 1년을 연장해 수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수리 관련 정보(수리업자 신원, 결함 유형, 수리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 수리 비용 등)를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11)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2023년 5월 제정,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Regulation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추가 여부 결정 예정)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을 강제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관세제도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전환기간 EU 수입자는 CBAM 적용 품목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때 CBAM 인증서 비용은 EU-ETS(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탄소가격과 연계해(수입 품목 탄소 배출량에서 관련 품목의 ETS 무상할당 배출량을 제외한 후 총 수입량과 ETS 평균 주간가격을 반영) 산정되는데, EU는 CBAM 본격 시행 이후 2026~2033년간 EU ETS 무상할당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12) NZIA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

2024년 6월 시행된 NZIA는 EU 기후목표(European Climate Law에 따라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탄소중립 기술 역량 확대와 산업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Regulation이다. 역내 수요 벤치마크(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역내 연간 수요의 최소 40% 생산) 및 전 세계 점유율 벤치마크(2040년까지 EU 탄소중립 기술 제품 점유율을 전세계 시장 15%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NZIA는 탄소중립 기술(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 탈탄소화 기술, 전력 그리드, 에너지 저장 및 생명공학 등 19개) 관련 설비 구축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전략적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증진, 탄소중립기술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를 통한 유럽 인력 기술 향상. 탄소중립 규제 샌드박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3) 기타 -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 전 입법 진행 중)**● FLR (Forced Labour Regulation, 강제노동 금지규정)**

FLR은 상품 원산지, 기업 설립 장소·규모, 완제품·부품 여부 불문하고 EU 역내외 모든 사업분야의 공급망 내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상품에 대해 EU 역내 유통 및 EU를 통한 제3국 수출을 금지하고, 이미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 비용으로 상품 회수 및 폐기 의무를 부과하는 Regulation이다. FLR은 조사를 통한 강제노동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위그르강제노동금지법(UFLPA)과는 차이가 있다.

●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재·포장재 폐기물 규정)

PPWR은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캡슐 커피, 티백 등)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도록 강제하면서, 신선식품이나 야채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사용 및 리필 목표,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강도높게 설정하고 있는 Regulation으로 향후 EU 입법기관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 합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GCD (Green Claims Directive, 친환경 표시 지침)

GCD는 기업에게 친환경(생분해성, 저공해 등)임을 주장하는 문구를 사용하기 전 친환경성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고, 해당 친환경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Directive로, 2024.3월 발효된 녹색 전환에 대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 ECGTD)상의 그린워싱 금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다.

앞서 EU가 최근 제·개정된 ESG 관련 주요 규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ESG가 연성규범(Soft Law)에서 경성규범(Hard Law)로 변화하는 과도기라 하지만, EU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여년 짧은 기간 ‘압도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ESG 규제를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에서부터 순환경제 구축, 인권·환경 보호 강화, 그린워싱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법률을 제정한 EU는 앞으로도 각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법률, 가이드스 및 또다른 ESG 관련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EU 기업뿐만 아니라 거대한 EU 시장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非EU 기업도 EU가 제시하는 한층 강화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일부 EU ESG 규제는 규제 부담이 EU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 非EU 기업을 적용대상에 직접 포함시키거나, 관세 부과 방식으로 非EU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EU 입법에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EU와 유사한 ESG 규제 도입이 추진력을 얻는 상황으로, EU의 ESG 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U의 ESG 규제는 이제 막 대강의 설계만을 완료했을 뿐, 실제로 해당 규제를 집행·운영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행 단계에서 그간 기업 자율에 기반에 규제해왔던 광범위한 ESG 영역을 명확성이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끌고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감독당국의 집행력 한계, 분쟁·소송 급증, 기업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 등)에서부터 국가 간 통상 마찰, 그린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미 어마어마한 ESG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EU조차도 친환경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ESG 규제를 입법해 이를 강제하는 것만으로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를 비롯해 기업, 정부 등 시장 플레이어

모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역시 ESG 규제 도입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